

울산지방법원 2021. 7. 23 선고 2020가단119997 판결 [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재판경과

울산지방법원 2022. 9. 27 선고 2021나14892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21. 7. 23 선고 2020가단119997 판결

전문

원 고 A(개명 전 이름: B)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

담당변호사 설창환

피 고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D

변론종결 2021. 5. 28.

판결선고 2021. 7. 23.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 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동구 E 임야 697㎡의 C 지분 3분의 1 전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3. 5.

13. 접수 제3519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1. 5. 12.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, C, F 주식회사는 1994. 1. 4. 울산 동구 G동(이하 ‘G동’이라고만 한다) H 임야 1653㎡와 I 임야 1217㎡를 각 3분의 1 지분씩 경락받아 1994. 5. 27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C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3. 5. 13. 접수 제35179호로 2003. 4. 15.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C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(이하 ‘이 사건 가등기’라 한다)를 마쳤다.

다. H 임야 1653㎡는 2006. 6. 20. H 임야 956㎡와 E 임야 697㎡(이하 ‘이 사건 임야’라 한다)로 분할되었다.

라. 원고는 H 임야 956㎡와 I 임야 1271㎡의 각 C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. 5. 13. 접수 제3767호로 2011. 5. 12. 매매를 원인으로 한 C지분전부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본등기’라 한다)를 마쳤다.

마. C에 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18하단5036호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이 사건 본등기 당시 이 사건 임야의 C지분에 관하여는 착오로 누락하여 본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C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1. 5. 12.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이 사건 가등기 이후 이 사건 임야가 H 임야 1653㎡에서 분할된 것이기는 하나, 원고는 H 임야 1653㎡가 분할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점, 이 사건 본등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‘H 임야 956㎡와 I 임야 1217㎡의 각 C지분’으로 목적 부동산의 지번과 면적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, 이 사건 본등기 이후 9년이 더 지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에 비추어보면,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(갑 제3호증)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본등기 당시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의 C지분이 누락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강경숙